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01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조건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임시사무소의 정의와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추가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임시사무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2호).
- 나. 내국인 상시 고용 2명을 초과하는 임시사무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안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4조제1항과 제2항에”로 한다.

안 제16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국내 금융기관</u>”이란 「<u>금융중심지의 조성</u>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3. “<u>외국 금융기관</u>”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4. ~ 8.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금융기관</u>”이란 「<u>금융중심지의 조성</u>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u>국내 금융기관</u>과 법 제2조 제3호의 <u>외국 금융기관</u>을 말한다.</p> <p>3. “<u>임시사무소</u>”란 <u>국내 금융기관의 창업</u> 또는 <u>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u>이나 <u>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u>를 말한다.</p> <p>4. ~ 8.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u>시장</u></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현행)</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u>시장</u></p>

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 이전,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삭제>

<삭제>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

<p>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p> <p>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외한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p>
<p>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u>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u>제4조제1항과 제2항에</u>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 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 우 <u>예산의 범위 내에서</u>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개 정안 제1항과 같음)</p> <p>② ----- ----- <u>예산의 범위에서</u> ----- -----.</p>																		
<p>제16조 ~ 제18조 (생략)</p>	<p>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p>	<p>제17조 ~ 제19조 (개정안과 같음)</p>																		
<p>[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 8조와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83 1222 736 1348"> <thead> <tr> <th>항목</th> <th>지 원 기 준</th> <th>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용 설비</td> <td>◦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td> <td>기관당 10억원 이내</td> </tr> </tbody> </table>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	기관당 10억원 이내	<p>[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 8조와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822 1222 1375 1348"> <thead> <tr> <th>항목</th> <th>지 원 기 준</th> <th>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용 설비</td> <td>◦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td> <td>기관당 10억원 이내</td> </tr> </tbody> </table>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	기관당 10억원 이내	<p>[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 8조와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460 1222 2013 1348"> <thead> <tr> <th>항목</th> <th>지 원 기 준</th> <th>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용 설비</td> <td>◦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td> <td>기관당 10억원 이내</td> </tr> </tbody> </table>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	기관당 10억원 이내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	기관당 10억원 이내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	기관당 10억원 이내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	기관당 10억원 이내																		

설치 자금	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신 설>

설치 자금	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현행과 동일)

<신 설>

설치 자금	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 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4조제1항과 제2항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항목	지원 기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0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	-------------

-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국내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3. “외국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4. ~ 8.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p> <p>3.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p>	<p>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p> <p>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p>

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
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제16조 ~ 제18조 (생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 8조와 관련)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 8조와 관련)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u>범위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 대 6개월의 <u>범위 내에</u> <u>서</u> 월 50만원 이내 (1 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	-------------------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
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신 설>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 대 6개월의 <u>범위에서</u>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	-------------------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
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
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
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
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